#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·

# 도로교통법위반

[대법원 2018. 7. 11. 2018도6352]



# 【판시사항】

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,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

#### 【참조조문】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(나)목, 제4조 제1항 제1호, 제60조 제1항 제2호, 형사소송법 제307조, 제308조

### 【참조판례】

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4도1779 판결(공2014상, 1084)

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

【상 고 인】 피고인피고인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최진환

【원심판결】 춘천지법 2018. 4. 6. 선고 2017노992, 1081 판결

### 【주문】

]

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.

#### [이유]

- 】 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- 1.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,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,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,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,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.

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, 객관적 상당성,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,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.

특히,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,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,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(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4도1779 판결 참조)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,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,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(대법원 2001. 8. 21. 선고 2001도2823 판결, 대법원 2006. 3. 9.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).
- 2.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 1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(이하 '필로폰'이라 한다)을 거래하였다는 부분(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096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)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.

가. 필로폰 매수

피고인은 2016. 2. 중순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보라매역 부근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공소외 1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.

나. 필로폰 판매

피고인은 2016. 2. 중순 또는 하순경(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1주일 후)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군자역 부근 CGV 영화관 앞 노상에 주차된 공소외 1의 승용차 안에서 공소외 1에게 필로폰 약 10g을 200만 원에 판매하였다. 다.

필로폰 무상수수

- 피고인은 2016. 2. 중순 또는 하순경(위 나항 기재 일시 다음 날) 위 CGV 영화관 앞 노상에 주차된 공소외 1의 승용차 안에서 공소외 1로부터 필로폰 약 1q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.
- 3.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2의 가항 공소사실(이하 '가항 공소사실'이라 한다)은 자백하면서도, 나, 다항 공소사실(이하 '나, 다항 공소사실'이라 한다)은 부인하였다.
- 원심은 공소외 1의 제1심 법정진술과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, 통화내역 사본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로 거시하고, 이러한 증거들과 특히 필로폰 거래 상대방으로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제 1심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에 의하면, 나, 다항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.
- 4.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, 공소외 1의 법정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,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, 나, 다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어렵다.
- 가. 공소외 1은 2016. 3. 29. 검찰에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보하였고, 당시에는 가항 공소사실의 일시를 '2016. 2. 초순 새벽경'으로, 나항 공소사실의 일시를 '2016. 2. 초순 또는 중순 자정경(가항으로부터 약 1주일 후쯤)'으로, 다항 공소사실의 일시를 '나항 공소사실 일자의 다음 날 21:00~22:00경'으로 진술하였다(검찰 제1회 진술조서).
- 나. 공소외 1은 2016. 6. 29. 검사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시하며 '가항 공소사실'의 일시가 2016. 2. 중순경이 아닌지 문자, 통화내역을 살펴본 후 "제가 통화내역을 보니, 2016. 2. 중순경이 맞는 것 같습니다.
- "라고 진술하였고(검찰 제2회 진술조서), 이어서 '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1g을 판매하고, 약 1주일 뒤에 군자CGV 영화관 앞에서 만나 나항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 약 10g을 매수하였다'고 진술하였다.
  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공소외 1은 제1심법정에서 위와 같이 날짜를 변경하여 진술한 경위에 관하여, "제가 군자역으로 갈 때 와이프와 계속 통화하면서 갔거든요. 그날 제가 와이프와 통화를 오래 했습니다.
  - 신림동에서 군자역까지 가는 내내 계속 통화를 하면서 갔거든요. 핸드폰 통화내역을 보니까, 그날 와이프와 통화한 기록이 책정이 되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.
- ", "제가 그날 와이프와 싸워서 통화를 엄청 길게 한 날인데, 통화내역을 보니까, 그날 통화한 기록이, 제가 피고인에게 10g을 거래할 당시 그때 기록이 나와서, 그렇게 진술한 것입니다.
  - "라고 하여, 오히려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본 후에 '나항 공소사실'의 일시를 특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.
- 라. 그런데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된 공소외 1의 휴대전화 통화내역(2016고단8096 사건 증거기록 87~115면)에서는, 2016. 2. 중순경부터 하순경 사이의 야간에, 발신기지국 위치가 신림동 부근에서 군자역 부근으로 이동하면서, 긴시간 동안 또는 특정인과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을 찾을 수 없고, 이는 공소외 1의 위 법정진술과 배치된다.
- 마. 공소외 1은 또한 제1심법정에서, 피고인과는 직접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없으나,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공소 사실 나항 기재 필로폰 10g의 품질이 좋지 않아 이를 반품하려고 할 때 공소외 2와 직접 통화를 했다고 진술하였다.
- 그러나 위 휴대전화 통화내역에는 2016. 2. 중순경부터 하순경 사이에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통화한 내역도 찾을 수 없다.
- 바. 공소외 1은 2016. 3. 29. 검찰에 피고인을 위와 같이 제보할 당시, 별개의 필로폰 매도, 수수, 투약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, 2016. 3. 31. 위 혐의들에 대해서는 기소되었는데(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656), 피고인과 관련된 위가, 나, 다항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.
- 사. 한편 증거로 채택되어 조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(2016고단8096 사건 증거기록 117~128면)에 의하면, 피고인이 2016. 2. 중순경 군자역 부근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.
  -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, 당시 피고인은 군자역 부근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, 위와 같은 통화사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.
- 오히려 공소외 1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중에는, 2016. 2. 중순경부터 하순경 사이의 야간에, 발신기지국 위치가 이틀 연속으로 군자교 부근으로 확인되는 내역을 찾을 수 없으므로, 휴대전화 통화내역만으로는 공소외 1이 나, 다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군자역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.
- 5. 그런데도 원심은 공소외 1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, 이를 기초로 피고인에 대한 나, 다항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였다.
  -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, 공소사실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,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타당하다.
- 6. 파기의 범위
-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파기사유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096 사건의 공소사실 중 필로폰 판매, 필로폰 무상수수의 점은,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,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,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.

#### 7. 결론

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다시 심리·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박정화(재판장) 김신 박상옥(주심) 이기택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